

제19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3. 7. 12.)

조례안 검토 보고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손 용 모]

목 차

| | | |
|---|--------------------------------------|----|
| 1 |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
| 2 |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
| 3 |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
| 4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14 |

〔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07.02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07.02

2. 개정이유

- 전국 3,48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공모사업에 북상면이 선정됨에 따라,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설치지역 및 기능을 정함(안 제4조, 제5조)
- 주민자치회는 시범실시 선정지역인 북상면에 군수가 설치하고, 협의, 위탁 등 주민자치업무 수행
- 나. 위원의 정수, 자격을 정함(안 제6조, 제7조)
 - 위원은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
 - 자격은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이상의 세대주 등
- 다. 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위원은 위원선정위원회 선정, 여성위원 40퍼센트 이상
- 라. 선정위원회 구성을 정함(안 제8조)
 - 위원은 9명 이내(읍·면장 3, 이장협의회 3, 지역대표 등 추천 3명)
- 마. 위원 임기와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제17조)

바. 유효기간 및 경과조치 규정을 둠(안 부칙)

-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은 북상면에 한정, 2014년 7월 31일까지 적용함
-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정관·재산 등을 승계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나. 예산조치 : 국비로 운영(약 1억원)

다. 합의 : 기획감사실

라. 입법예고(2013. 06. 17. ~ 06. 27.)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라.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안정행정부'에서 전국 3,48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공모사업에 북상면이 선정됨에 따라, '자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 하는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2조** 정의에서 '주민자치회'란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체센터 운영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이며

- **안 제3조에서**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의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 진흥과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등의 운영원칙을 규정하였음
- **안 제6조에서** ‘주민자치회’는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안 제7조’에서 위원의 자격은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등으로 제한하였음.
- **안 제8조에서** 위원의 선정은 지역, 주민, 직등대표위원이 10명 이하의 위원을 추천하고 비율도 동일하게 구성도록 하였으며, 여성 위원이 40%가 넘도록 하였으며,
- **안 제9조에서** 선정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도록 하고, 읍·면장 3명, 이장협의회 3명, 지역대표 연합단체 등에서 추천한 3명을 군수가 위촉토록 함.
- **안 제16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7조에서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9조에서** ‘주민자치회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안 부칙 제3조에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재산 등을 승계하고, 군수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재 위촉토록 하였음.

○ 본 제정 조례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공모사업에 북상면이 선정됨에 따라,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3.5.28.] [법률 제11829호, 2013.5.28., 제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07.02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07.02

2. 개정이유

- 「보건진료소 관리규정」폐지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활동장려금이 중단됨에 따라 의료업무수당 지급액 설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을 신설함(안 제2조제3호, 별표 3)
 - 월 25만원(활동장려금 20만원 + 의료업무수당 5만원)
- 나. 지급대상이 없는 장려수당 일부를 삭제함(안 제3조, 별표 4)
 -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순화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나. 예산조치 : 2013년도 예산확보 54,000천원

- 다. 합의 : 기획감사실
- 라. 입법예고(2013. 05. 08. ~ 05. 27.)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기금에서 지급해 오던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활동장려금이 「보건진료소 관리규정」폐지로 활동장려금 지급이 중단됨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액 설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은 5명이 증가되고 기능직의 경우 2명이 감소되는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개정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6.12.] [대통령령 제24582호, 2013.6.11., 일부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연구직공무원은 별표 9의 제3호 및 제7호의 수당에 한정한다)을 지급한다.

[별표 9]

특수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14조관련)

| 구분 | 수당명 | 지 급 대 상 | 지급액 및 지급방법 |
|--------------|-------------------------|--|--|
| 기술분야 | 1. 기술정보수당 | | |
| | 2. 의료 업무 등의 수당 | <p>가. 의무 · 약무 · 간호직 · 보건진료직 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의무 · 약무 · 간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와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승선 · 근무하는 공무원</p> <p>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p> <p>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동물 · 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수축(獸畜)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한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무직렬공무원, 보건진료직렬공무원 및 병원선승선근무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약무직렬공무원 : 월 70,000원 간호직렬공무원 : 월 50,000원 <p>월 50,000원</p> <p>월 150,000원</p> |
| 교육 및 연구분야 | 3. 연구업무수당 | | |
| | 4. 교원에 대한 보전수당 | | |
| 특수장비 취급분야 | 5. 항공수당 | | |
| | 6. 함정근무수당 | | |
| 특수행정 분야 | 7. 장려수당 | | |
| | 8. 개방형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 | | |
| | 9. 경제자유구역청업무수당 | | |
| | 10. 특수직무수당 | | |

□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 복지부 훈령

제14조(활동장려금 등) ① 운영협의회는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건진료원에게 200,000원(도서지역의 경우 300,000원) 한도내에서 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훈령 제29호 :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폐지

- 2011.12.16 폐지 보건진료소 운영방식 변경
- 민간위탁 운영 → 자치단체 직접운영
-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 기금 일반회계로 전환

□ 「의료법」

[시행 2013.1.1] [법률 제10387호, 2010.7.23, 일부개정]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 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產)과 임부(妊娠)·해산부(解產婦)·산욕부(產褥婦)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07. 02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07. 02

2. 개정이유

-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내용을 담고 있는 항목을 삭제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지원 관련 포괄적인 내용을 삭제함(안 제3조제2항제4호)
- 그 밖에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사립학교법』 제43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의 : 기획감사실
- 라. 입법예고(2013. 04. 23. ~ 05. 13.)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한국승강기대학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내용을 담고 있는 항목을 삭제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조례로서 개정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사립학교법」 제43조

제43조(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1.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

2.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예산이 지원의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하는 일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은 이를 중단할 수 있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등의 보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私立)의 산업교육기관이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실습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과 실험·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가 보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의안번호 제2013 - 53호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07. 02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07. 02

2. 개정이유

- 체육시설 감면대상에 영유아 대상 행사와 수영장 사용 여성회원 중 '가임여성'의 경우를 신설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어린이와 영유아에 대한 정의를 변경함(안 제2조6호)
 - 어린이 : 하한 연령 7세 이상 ⇒ 6세 이상
 - 영유아 규정 신설 : 6세 미만의 취학 전의 사람
- 나. 사용료의 감면대상을 확대함(안 제15조제2항 · 제4항)
 - 사용료 30% 경감 : 영유아 대상 행사 추가
 - 수영장 이용 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여성회원에 대하여 월 이용료의 10퍼센트 감면 규정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3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의 : 기획감사실
- 라. 입법예고(2013. 04. 22. ~ 05. 11.)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 감면대상에 영유아 대상 행사와 수영장 사용 여성회원 중 가임여성의 경우를 신설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사립학교법」 제43조

제43조(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2.7.18] [법률 제11169호, 2012.1.17, 일부개정]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7.18] [대통령령 제23955호, 2012.7.17, 일부개정]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